

시 방 서

I.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구미코 전면광장 파손 화강석 교체 공사

2. 대상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49 구미코 전면광장 부지

3. 목적

본 시방서는 구미코 전면광장 부지에 설치된 화강석 중 파손된 물량을 견어내고 교체 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공사기간 : 계약일로 부터 30일간

5. 적용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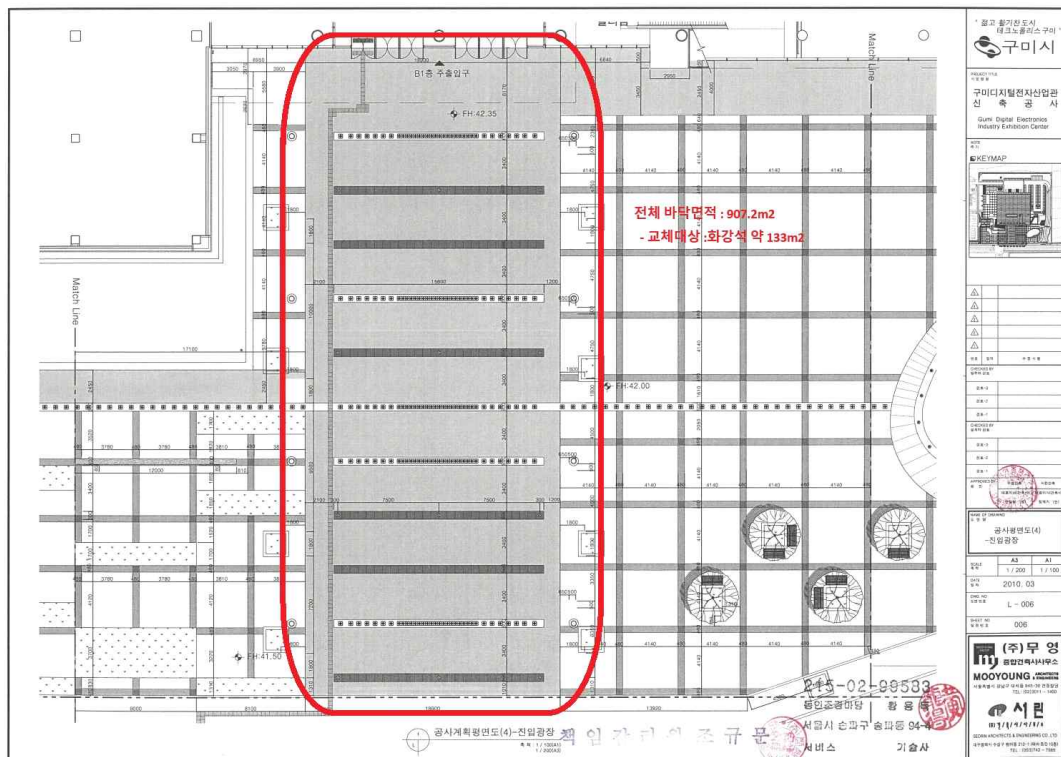
- 1) 건축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석공사)
-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3) 한국산업규격
- 4)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6. 과업내용

- 가. 기존 화강석 철거 및 설치 약 133m²
- 나. 폐기물처리

7. 자재입고

- 가.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의 신품 및 지정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작업 완료일 전 일체 물품반출을 금한다.



공사범위 : 구미코 전면광장 총907.2m2 가운데 파손된 화강석에 대한 교체 시공

II. 공사시행

1. 적용 및 우선

- 가. 본 공사는 건설관련 모든 법에 준용하여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나. 본 지방과 도면 및 제반 표준지방서에서 정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등을 명시된 기준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 다. 또한 설계도서 및 지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고,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라.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 마. 계약서에서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착공 및 준공

-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시방서와 공사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하며,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공사완료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 공사완료보고서
 - 2) 준공사진대지 및 폐기물처리 필증

3. 안전관리

- 가.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나. 구미코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하며, 행사일정을 고려해 작업일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득이 행사일정에 겹쳐 작업을 시행할 경우 내방객들의 안전통로를 미리 확보하는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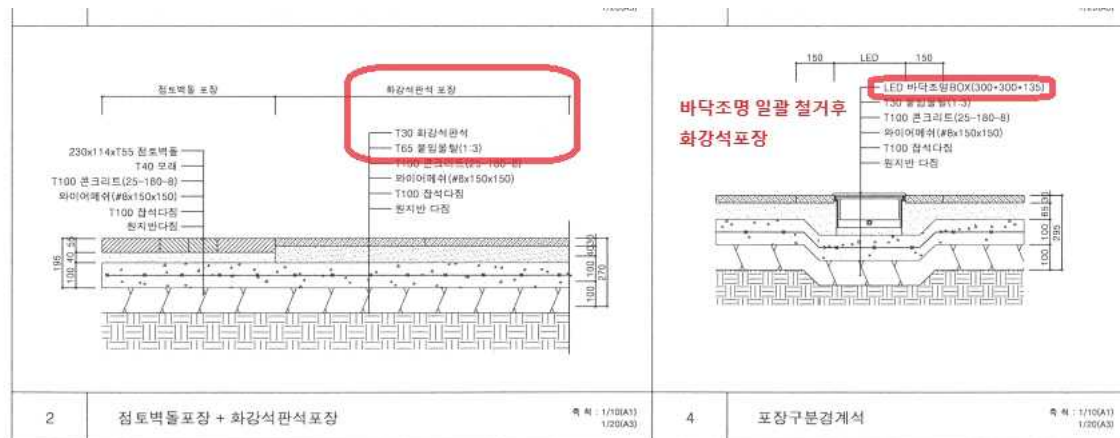
5. 자재관리

-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K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 나. 규격미달 및 부실자재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시에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Ⅲ 화강석(포천석과 고흥석)시공

1. 시공관리

- 가. 시공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바닥마감단면

1. T30두께의 화강석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부 바닥몰탈 (65T)를 밀실히 채운후 시공
2. 기존 LED 바닥조명은 일괄 철거하고 화강석으로 재시공 하여야 함

나. 시공시 주변의 화강석과 레벨을 맞추어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바닥 돌의 설치는 된비빔 몰탈로 평평하고 턱이지지 않게 시공한다.

라. 줄눈 나비는 일매지고 줄이 바르게 설치한 다음 줄눈자리에서 사춤몰탈을 충분히 밀어 붓는다.

2. 폐기물처리 및 현장관리

가.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등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IV. 기타사항

1. 본 과업은 지방서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사용될 자재는 필히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 검수에 합격한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본 작업은 시설공사 일반 조건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하며 시공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의 해석에 따른다.
4. 과업의 수행에 따라 당사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 계획서를 제출 하여

승인된 일시에 정밀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시공 중 유관 관서의 인허가 사항이나 제반 수속 및 기타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과업의 시공 기간 중 수급자는 현장 대리인을 상주시켜 안전작업 및 정밀시공을 지휘해야 하며, 만약 불의사고 발생 시 수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7. 본 과업의 시공 중 당사의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경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원상 복구 하여야한다
8. 본 과업의 시공에 따라 발생된 공사 발생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하며 , 이에 따른 제반 수속 및 경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9. 과업의 시공 중 설계서 및 도면과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이의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수급자는 본 공사의 공정에 대하여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완료 후 감독원의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준공 된 것으로 본다.
12. 본 과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준공 하여야 한다. 단, 구미코의 일정상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13. 본 과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4. 본 과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관리 기준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5. 은폐장소 또는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및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 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관의 입회 하에 조립, 시공하고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 하여야 한다
16. 정비의 중요부분의 기록은 가능한 수치화 하며, 기록 보존할 자료로 작성하여 완공 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V. 안전사항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구미코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는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작업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여야 한다.